

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 안내

1. 외부심사위원 제청 서류제출

가. 제출대상: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 중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

※석사과정은 외부심사위원 제청 의무 없음

나. 대학원 학칙 제34조(학위논문 심사)에 의거하여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, 외부심사위원(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) 1인 내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.

다. 제출기간: 2022. 4.11.(월) ~ 4.21.(목) 12시까지

라. 제출서류: (박사과정)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

마. 제출방법

- 1) 외부심사위원을 심사신청자가 섭외한 경우: 아래 표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 제출
- 2) 외부심사위원을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섭외한 경우: 제출서류를 소속 학과(전공)에서 준비하므로 심사신청자가 제출할 서류 없음
- 3) 서식 다운로드: 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1647

구분	심사위원 자격	제출서류
1	국내·외 대학의 전임교원 (명예, 초빙, 석좌, 겸임 포함)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 해당 대학의 재직 증명서
2	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강의경력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경력 (전임연구원)이 통산 3년 이상인 자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, 경력증명서 및 박사학위증 사본(또는 박사학위(졸업)증명서)
3	위 “심사위원 자격”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대학에 강의, 논문지도교수,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	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

2. 심사위원 제청 결과확인

가. 확인기간: 2022. 5.10.(화) 10시부터

나. 확인사항

- 1) 확인경로: 샘플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- 2) [논문(대체)심사신청]메뉴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①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명단 확인: 석사과정 3인, 박사(석박사통합)과정 5인
※ 예비심사 위원이 본심사도 심사합니다.
- 4) ②예심일자 및 예심장소, 본심일자 및 본심장소 확인하여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, 심사위원에 배부할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 ③출력하여 예비심사에서 서식을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을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.
▶서식 다운로드: www.smu.ac.kr/grad/board/format.do?mode=view&articleNo=710810
- 5) 심사위원 명단, 예심·본심 일자 및 장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함.

조회

학번/성명* 전공*

학번	성명	성별	학기	4	이수학기	4	다 전 제
과정구분	일반학생 본교생(석사)	소속					
학적상태		입학구분	신입학	국적			
최종변동		재입학일		전형			
지도교수		휴대전화		E-mail			

학위청구 논문(대체)심사 신청 정보

신청년도*	신청학기*	지도교수	구분	졸업논문
성적	총평점평균	교직		
자격시험	종합시험 : 합격	외국어시험 : 합격		
논문(대체)제목				
(영문)				
논문(대체)부제				
(영문)				
연구윤리*	준수서약	Y	연구윤리 수료증첨부	연구윤리 수료일자
				2020-10-20
논문심사비	90,000	신청일자	2020-10-15	승인여부
				Y
지도교수 지도비	②	예심일자	2020-11-24	예심장소
연구등록비	0	본심일자	2020-12-01	본심장소
④ 총납입금액	90,000	납입일자	⑤ 2020-10-16	
가상계좌		은행	우리은행	예금주

학위청구 논문 예비심사 위원 [3]

No	구	① 사번	위원명	소속 대학교명	소속 학과명	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
1						보고서 출력
2						보 ③ 력
3						보고서 출력

2022. 5.10.(화) 10시부터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이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2022. 5.10.(화) 이전에 명단이 출력될 수 있으나, 소속 학과(전공)의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.)
심사위원 명단을 확인하시어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을
위원당 1부씩 심사위원장용과 심사위원용으로 구분하여 심사장에서
심사위원단에 배부해주십시오.

3. 심사경비 납부결과 확인

가. 납부기간: 2022. 4.14.(목) 14시 ~ 4.19.(화) 23시까지

나. 납부방법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에서 부여된
④총납입금액을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

다. 확인기간: 2022. 4.20.(수) 10시부터

라. 확인사항

- 1) 확인경로: 샘물포털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심사신청
- 2) 논문(대체)심사신청메뉴에서 ⑤“납입일자”가 출력되면 납부가 확인된 것입니다.

4. 심사 진행 관련: 대면심사

가.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전수칙 준수

나. 참석자 상호간 2m 이상 거리 확보,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

5.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

기간	내용	비고
2022.04.06.(수)~04.12.(화)	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※논문심사비, 논문지도비(수료자), 연구등록비(수료자)를 입금 하여야 논문심사 신청이 완료됨.	신청자
2022.04.14.(목) 14시 ~04.19.(화) 23시까지	학위청구논문 심사경비 납부	
2022.04.15.(금)~04.25.(월)	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과 승인 및 심사위원 제청 ※외부 심사위원에 관해서는 자격확인서 제출	학과
2022.04.28.(목)~05.09.(월)	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 선정 심의 대학원위원회 심의결과 학과 통보(특이사항 있을 시)	대학원교학팀
2022.05.10.(화)~06.04.(토)	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시행	
2022.05.27.(금)~06.13.(월)	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제출	학과
2022.07.06.(수)~07.13(수)	심사 합격자 학위청구논문 최종작성 인준 제본 제출	합격자

※ 논문심사위원 제청이 짧은 기간 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청자와 해당 학과는 심사신청 즉시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위원 섭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에 의거하여 반드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번학기에 심사 신청하고자 한다면 2022. 4. 6. (수)~4.12.(화) 심사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6. 관련 규정

가.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44조(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)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.

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,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)이 행한다.

나. 대학원 학칙

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강사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
③지도교수는 적절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생략

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4조(학위논문 심사)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(논문)지도교수와 동일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이 제청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(석사 3인, 박사 5인)으로 구성한다. 단,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하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도교수 인원은 심사위원 총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박사과정 심사위원에는 타교 전임교원 또는 전문인사 1인 내지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루어지며,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심사를 받을 수 없다.

④심사의 통과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,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4/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다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49조(심사위원 제청) ①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소정기간 내에 심사신청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그 명단을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한다. 이때 학칙 제34조 1항 및 2항에 따른다.

②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배제한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삭제

④예비심사와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동일하다.

- 붙임 1. 학위청구논문 외부(초빙)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1부.
2.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심사위원장용 및 심사위원용 각 1부.
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2022. 3.

대학원장
교육대학원장
통합심리치료(상담)대학원장
경영대학원장
문화기술대학원장
예술디자인대학원장